

3

수익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시행

문 의

행정안전부	회계제도과	(☎ 044-205-3782)
충청북도	회 계 과	(☎ 043-220-2822)

❖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수익 계약 확대, 계약 절차 간소화, 선금 특례, 지연배상금 면제 등을 시행합니다.

대 상

- 코로나19 관련 공사·용역·물품 등의 계약
- 계약절차 간소화 대상 모든 공사·용역·물품 등

내 용

- 수익계약 확대 :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익계약으로 도민 피해 최소화
 - 열화상카메라, 마스크·손세정제 등 구입
 - * 재난복구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
-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절차 간소화
 - 입찰공고 단축 : 7~40일 → 5일
 - 적격심사 단축 : 7일 → 3일
 - 구매규격사전공개 : 5일 → 3일
- 선금 특례시행
 - 선금 기 지급한 경우도 최대선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
 - 선금지급률 70% → 80%로 상향 등
- 지연배상금 면제 : 코로나19 관련 납품지연 시
- 계약금액 조정 : 부품·재료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
- 계약심사 제외 : 긴급사정 등 필요시

[관련법령] 지방계약법 제9조, 제10조, 제18조, 제22조, 제30조 등